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4.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신고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견이 있는 지상파라디오방송에 대한 재송신승인 폐지를 삭제함(안 제9조제5항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5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안 제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
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
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
록 방송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
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

가. 텔레비전방
송을 제외한

-----.

1. (개정안과 같음)

2. -----

가. 라디오방송
을 하는 방송

	<u>방송을 하는</u> <u>방송채널사용</u> <u>사업을 하려는</u> <u>경우</u> <u><신 설></u>	<u>채널사용사업</u> <u>을 하려는 경</u> <u>우</u>
	<u>나. 텔레비전방송</u> <u>중 시청자가</u> <u>특정 시간 및</u> <u>특정 방송프로</u> <u>그램을 선택하</u> <u>여 시청할 수</u> <u>있도록 방송프</u> <u>로그램을 제공</u> <u>하는 방송채널</u> <u>사용사업을 하</u> <u>려는 경우</u>	<u>나. 데이터방송</u> <u>을 하는 방송</u> <u>채널사용사업</u> <u>을 하려는 경</u> <u>우</u> <u>다. (개정안 나목</u> <u>과 같음)</u>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⑥ ~ ⑪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⑫ 과학기술정보통</u> <u>신부장관은 제5항</u> <u>제2호에 따라 방송</u> <u>채널사용사업의 신</u>	<u>⑫ · ⑬ (개정안과</u> <u>같음)</u>

<u>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u> 第78條(再送信) ① ~ ③ (생략)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지상파 방송</u>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u>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u> 第78條(再送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지상파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 -----.	第78條(再送信)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u>지상파 방송</u>-----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050
----------	------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원안에 대한 수정 사항

신고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견이 있는 지상파라디오방송에 대한 재송신승인 폐지를 삭제함(안 제9조제5항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登録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제9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허가·승인 및 등록”을 “허가·승인·등록 및 신고”로 한다.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5항 본문”을 “제9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말한다), 부조정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로, “말한다), 종합편집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로, “말한다) 및”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구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1항제2호 중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언거나 變更登録을”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항 및 제11항”을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언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許可·變更許可·再許可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再承認을 얻거나 登録·變更登録을”을 “허가·변경허가

· 재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録”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받지 못한”을 “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録을”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 중 “許可條件·承認條件·登録要件”을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으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許可·승인 또는 登録을”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9호 단서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각目の 者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u>登録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者</u> 마. (생략) 4. ~ 27. (생략) 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u>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u>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u> 마. (현행과 같음) 4. ~ 27. (현행과 같음) 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u>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

⑥ ~ ⑪ (생략) <u><신설></u>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허가·승인 및 등록</u>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u>제9조제5항</u>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구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u>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u> <u>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u>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⑬ ----- <u>제12항</u>----- ----- <u>허가·승인·등록</u> <u>및 신고</u>----- -----.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u>제9조제5항제1호</u>----- ----- ----- -----. 1. ----- ----- ----- <u>말한다. 이하 이 조</u> <u>에서 같다</u>-----. ----- ----- -----. 2. ----- -----
--	---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추는 것

3.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
-----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
----- 말한다. 이하 같다) 및 -----

3. 4.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추는 것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결격사유)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
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제18조에 따라 허가·승인 또
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
· 제3항·제5항·제6항·제8항
·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
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 7. (생략)

第15條(變更許可等) ①放送事業者
· 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
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
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

--.

1. (현행과 같음)

2. ----- 허가·승인·
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
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여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등록 또
는 신고를 -----
-----.

1. ~ 7. (현행과 같음)

第15條(變更許可等) ① -----

----- 변경
하려는 -----

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録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準用한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 -----

-----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등) ①-----

----- 받아야 -----. -----

----- 등록 또는 신고를 --

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

----- 허가·
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

-----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

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許可・變更許可・再許可</u> 를 받거나 <u>승인・변경승인・再承認</u> 을 얻거나 <u>登録・變更登録</u> 을 한 때	1. ----- ----- <u>허가・변경허가・재허가</u> 또는 <u>승인・변경승인・재승인</u> 을 받거나 <u>등록・변경등록</u> 또는 <u>신고・변경신고를</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이 法에 의한 <u>許可</u> 를 받거나 <u>승인</u> 을 얻거나 <u>登録</u> 한 날부터 2年 이내에 放送 또는 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 <u>허가</u> 또는 <u>승인</u> 을 받거나 <u>등록</u> 또는 <u>신고</u> -----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u>변경등록</u> 을 하지 아니한 때	6. ----- ----- <u>변경등록</u> 또는 <u>변경신고</u> 를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u>등록</u>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등록</u> 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 <u>등록</u> 또는 <u>신고</u> 한 -----
1. 2. (생략)	-- <u>등록</u> 또는 <u>신고수리</u> 를 ---.
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④ (현행과 같음)
	⑤ -----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③ (생략)

④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 放送分野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략)

 --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
수리를 -----
 ----- 하지 아니
하는 -----

 -----.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

 -----.

⑤ -----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

 -----.

⑥ ~ ⑪ (현행과 같음)

第99條(是正命令등) ①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是正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이 법 또는 許可條件・承認條件・登録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생략)

第101條(聽聞)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8조에 따른 許可・승인 또는 登録을 취소하는 경우

3.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99條(是正命令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

② (현행과 같음)

第101條(聽聞) -----

-----.

1. (현행과 같음)

2. -----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

3.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1. ~ 18. (생략)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u>등록한</u>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 28. (생략) ②·③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 ----- ----- ----- <u>등록</u> 또는 <u>신고한</u> ----- -. 19의2. ~ 2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